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3호
의결년월일	98. 5. 2 (제60회)

제안년월일 : 1998. 5. 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정수가 동별 1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설치기준에 의거 부천시는 35개 동으로 인하여 의원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인 경우 설치 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수(운영위원회포함)는 4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에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의 수 조정(안 제2조)
- 현행 5개 상임위원회 → 개정 4개 상임위원회
 - ※ 의원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의 경우 4개(부천시 35인)
- 위원회별 명칭변경 및 소관사무 조정(안 제3조제2항)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실, 감사담당관실(읍부즈만), 재정경제국,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
 - 총무복지위원회 : 총무국, 시민복지국, 사업소 중 보건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 환경건설위원회 : 환경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조례 제 호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인 이내
2. 기획재정위원회 11인 이내
3. 총무복지위원회 11인 이내
4. 환경건설위원회 12인 이내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실, 감사담당관실(읍부즈만), 재정경제국,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3. 총무복지위원회

총무국, 시민복지국, 사업소 중 보건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4. 환경건설위원회

환경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중 “총무, 재정경제, 환경복지, 건설교통위원회”를 “기획재정, 총무복지, 환경건설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생략)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1. 의회운영위원회 12명 이내	1. 의회운영위원회 9인 이내
2. 총무위원회 13명 이내	2. 기획재정위원회 11인 이내
3. 재정경제위원회 12명 이내	3. 총무복지위원회 11인 이내
4. 환경·복지위원회 12명 이내	4. 환경건설위원회 12인 이내
5. 건설교통위원회 12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생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총무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실, 총무국, 시민복지국(시민과, 문화체육과), 감사담당관실, 사업소 중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 기획실, 감사담당관실(읍부즈만), 재정경제국,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3. 재정경제위원회	3. 총무복지위원회
· 재정경제국,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 총무국, 시민복지국, 사업소 중 보건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4. 환경복지위원회	4. 환경건설위원회
·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국, 사업소 중 보건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 환경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5.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국, 사업소중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총무, 재정경제, 환경복지, 건설교통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 ----- 기획재정, 총무복지, 환경건설----- -----
② - ③(생략)	② - ③(현행과 같음)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3호
의결년월일	98. 5. 1 (제60회)

제안년월일 : 1998. 5. 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정수가 동별 1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설치기준에 의거 부천시는 35개 동으로 인하여 의원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인 경우 설치 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수(운영위원회포함)는 4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에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의 수 조정(안 제2조)
 - 현행 5개 상임위원회 → 개정 4개 상임위원회
 - ※ 의원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의 경우 4개(부천시 35인)

조례 제 호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인 이내
2. 기획재정위원회 11인 이내
3. 총무복지위원회 11인 이내
4. 환경건설위원회 12인 이내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실, 감사담당관실(읍부즈만), 재정경제국,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3. 총무복지위원회

총무국, 시민복지국, 사업소 중 보건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4. 환경건설위원회

환경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중 “총무, 재정경제, 환경복지, 건설교통위원회”를 “기획재정, 총무복지, 환경건설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생략)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1. 의회운영위원회 12명 이내	1. 의회운영위원회 9인 이내
2. 총무위원회 13명 이내	2. 기획재정위원회 11인 이내
3. 재정경제위원회 12명 이내	3. 총무복지위원회 11인 이내
4. 환경복지위원회 12명 이내	4. 환경건설위원회 12인 이내
5. 건설교통위원회 12명 이내	

